[서식 예] 영농보상금수령권 확인의 소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영농보상금수령권 확인의 청구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소외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가 2009. 4. 31. 매수한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764 전 1,739㎡에 대하여 책정한 영농보상금 5,923,030원에 관하여 원고가 그 수령권자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1. 당사자의 관계

원고는 1992년경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OOO으로부터 자신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피고 종중의 시제를 위한 제사도구를 관리하면서 피고의 전답인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-3 답 1,962.4㎡ 및 같은 리 764 전 1,739㎡(이하'이 사건 토지'라 함)를 경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.

그런데 당시 피고의 소유의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-3 답 1,962.4㎡은 마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고 있어, 쓰레기매립이 끝난 뒤 경작하기로 하였습니다.

그 무렵 원고는 피고 중중의 중원인 OOO등이 가져와 보관을 부탁한 제기, 제상, 병풍, 수저 등 제사도구를 사랑방에 보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종 시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원고의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
2.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수용

한편 원고는 1992년부터 피고 종중의 분묘와 제사도구를 관리하면서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764 전 1,739㎡(이하'이 사건 토지'라 함)에 옥수수, 참깨, 콩 경작해 왔습니다.

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밭이지만 그렇게 비옥한 편이 아니어서 소출도 거의 나

지 않아 누구도 지을 사람이 없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작료를 별도의 할 것은 없고, 원고가 피고 종중의 제사도구를 보관하는 대가 정도였습니다.

www.klac.or.kr/f/f/c

반면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-3 답 1,962.4㎡(약 3마지기)는 마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이 끝난 1997년부터 원고가 논으로 경작하였는데, 소작료는 OOO이 소작료로 해마다 1마지기 당 벼 2포대의 가격을 피고 대표자인 OOO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그 해부터 매년 OOO의 농협통장으로 소작료를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.

그런데 원고가 그 동안 경작해 오던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-3 답 1,962.4㎡ 및 이 사건 토지들이 2009. 7. 31. 소외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매수. 수용되었습니다.

3. 원고의 영농보상금 수령권

원고는 2009. 10. 16.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 리 644-3 답 1,962.4㎡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,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경작자 확인을 거부하여 아직까지 영농보상금 5,923,030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

피고가 원고에게 실경작자 확인을 해 주지 않은 이유는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644-3 답 1,962.4㎡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받았으나,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임대료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즉 원고가 불법으로 경작했다는 것입니다.

하지만 원고는 피고 종중의 제사도구를 관리하던 1992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

경작을 해 왔으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은 피고 종중의 분묘와 제사 등을 관리해 주던 대가였으며,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함안군 (OUT) OO리 644-3 답 1.962.4㎡과는 달리 별도의 소작료 약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.

또한 원고는 2006년경부터는 피고 종중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피고 종중의 분묘 8기도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은 피고 종중의 분묘관리에 대한 대가적 성격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원고는 ① 피고의 농지를 불법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고, 또한 ② 피고가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단체이지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'농민'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'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'는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농지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4. 확인의 이익

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원고가 불법 경작했다며 원고가 실경작자임을 확인해 주지 않아 원고의 OO 주식회사에 대한 영농보상금 수령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, 이와 같은 현재의 불안한 법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유효,적절한 수단이므로 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5. 결 론

원고가 1992년부터 최근까지 피고의 제사도구를 보관하고, 분묘를 관리한 대가

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, 경작해 온 것이므로 이것은 전혀 불법한 경작 constant 기계 모호 원고가 실제 경작을 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원고임이 분명하고, 원고와 피고와의 이러한 영농보상금 수령권 존부에 대한 분쟁에 대해 본 소송이 가장 유효, 적절한 수단인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.

입 증 자 료

- 1.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
- 1. 갑제2호증 영농보상지급조서
- 1. 갑제3호증 영농손실액보상 관련 통보
- 1. 갑제4호증 농지실경작사실확인서
- 1. 갑제5호증 사실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부

- 2. 소장 부본
- 3. 납부서
- 4. 위임장

 2000.
 0.

 위 원고
 000

 (서명 또는 날인)

OO지방법원 귀중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00년(☞소멸시효일람표) ***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